2025년도 (재)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(안)

의안 번호 2982

제출연월일 : 2025. . .

제 출 자:하낚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2025년 (재)하남문화재단재단 본예산 출연에 대한 하남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"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"
 - ※ 「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」 행정안전부 해석기준
 - 출자·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<u>출자·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</u>으로, **출연**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.

2. 주요내용

○ (재)하남문화재단 출연금 : 9,527,909천원

- 필 요 성 : 하남시 문화예술 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인

(재)하남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함

- 사업내용 : 재단 운영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 업무 추진

3. 세부내용

□ 출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출연대상	출연금액				
		2025년 본예산	2024년	증감액	증감사유	비고
1	(재)하남 문화재단	9,527,909	8,666,350	861,559	 마티네콘서트, 기성작가전 등 공연전시비 증액 Stage하남! 등 행사운영비 증액 생활문화센터 운영비(하다 및 신규센터 3개소) 증액 시설관련예산 및 공공운영비 증액 등 	

□ 출연대상

- 설립근거
 - 민법 제32조
 -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○ 일반현황

구	분	합 계	임원	정규직	계약직	파견공무원
정	원	49	1	46	2	_
현	원	46	1	42	3	_

○ 기능 및 주요사업

-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
- 박물관 운영 및 관리
-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의 국내·외 교류사업
-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조사 연구
- 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·관리
- 「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

- □ 출연금액: 9,527,909천원(2024년 8,666,350천원, 9.94% 중)
 - 증 감 액 : 861,559천원
 - 증감사유
 - 공연전시비 44,000천원 증액
 - 마티네콘서트, 하남 기성작가전 등 신규사업 기획 및 물가상승률 반영
 - · 2024년 700,000천원 → 2025년 744,000천원 (공연 2회, 전시 1회 신설)
 - 행사운영비 191,893천원 증액
 - · Stage 하남!(증액, 50,000천원), 꿈의 오케스트라(증액, 20,000천원) 등
 -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27,614천원 증액
 - '하다' 및 신규센터 3개소(덕풍,제2노인복지,감일) 운영
 - · 2024년 155,986천원 → 2025년 183,600천원
 - 시설관련 예산 62,580천원 증액
 - · 소극장 옥상 방수공사(신규, 37,840천원), 직원휴게실 및 사무공간 개선공사(신규, 50,000천원), 자산취득비 감액 조정 등
 - 인력운영비 증가 474,884천원 증액
 - · 재단 신규직원 4명 인력(45명→49명) 및 호봉상승분 등 반영

□ 출연근거

○ 「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7조(운영재원 등)

□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
-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,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,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등을 통하여 하남시 문화허브 도시로서의 환경 조성에 기여

□ 검토의견

○ 하남시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발전과 시민 수준 향상으로 다양화· 세분화된 문화수요에 걸맞은 고품질의 문화예술사업 제공을 위하여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 9,527,909천원을 출연하고자 함.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4조(사업) 법인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
 - 2. 박물관 운영 및 관리
 - 3.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 - 4. 문화예술의 국내 · 외 교류사업
 - 5.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 · 관리 및 조사 연구
 - 6. 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 · 관리
 - 7. 「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
 - 8.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- 제5조(재산의 조성)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 - 2.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
 - 3. 그 밖의 수입금
- 제7조(운영재원 등) 시는 법인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) 법인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